

「구미아시아연극제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아시아연극제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10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15회째 개최해 온 구미아시아연극제 개최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 연극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낭만문화도시 구미 홍보
- 나.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기술 활용하여 문화예술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아시아연극제 ※ 단년도 연례행사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「구미시 문화예술진흥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」 제5조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다. 위탁기간 : 2025. 1월 ~ 2027. 12월(3년)

라. 소요예산 : 연 150,000천원(도비 45,000 시비 105,000)

(단위 : 천원)

전체예산	운영비	홍보비	인건비
150,000	8,800	16,400	124,800

마. 위탁사무내용

- 1) 구미아시아연극제 총괄 운영
- 2) 연극제 기획 및 국내외 연극공연팀 섭외, 무대설치 등 운영
- 3) 예산수립 및 사업비 집행, 관계기관 협력 등

바. 위탁조건

- 1)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진흥 수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2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3) 최근 2년 이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관련분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- 2) 평가내용 : 사업계획,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아. 추진실적(2024년도)

- 1) 기 간 : 2024. 9. 3.(화) ~ 9. 8.(일) / 6일간
- 2) 장 소 : 소극장 공터다, 공유공간 함께한DA
- 3) 인 원 : 1,214명
- 4) 사 업 비 : 47.7백만원(도비 14.4, 시비 33.3)
- 5) 주 관 : (사)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(대표 김영심)
- 6) 내 용 : 해외공연 2개, 국내공연 4개, 작은극장 공연 6개

7) 행사일정

구분	일시	장소	작품명	극단명	비고
공공연 (50~80분)	9. 3.(화) 19:30	소극장 공터다	룸 아카네	극단 타이오 매직	일본
	9. 4.(수) 19:30		하이타이	극단 도시락	서울
	9. 5.(목) 19:30		인간을 보라	극발전소 301	서울
	9. 6.(금) 19:30		섬	극단 현장	진주
	9. 7.(토) 19:30		오늘, 엄마가 죽었다	극단 아오키리미캉	일본
	9. 8.(일) 19:30		예비예술인 기획공연	소행성 P-ART24	전국
작극연 (30분)	9. 3.(화) 18:30	공유공간 함께한 DA (소극장 공터다 2층)	관객참여형 1인 오브제극 <금시계>	숨	군산
	9. 4.(수) 18:30		테이블 오브제 인형극 <지구를 지켜라>	제라진	서울
	9. 5.(목) 18:30		테이블 인형극 <고마우체국>	줄리	안양
	9. 6.(금) 18:30		복합 인형극 <호랑이 뱃속 구경가유!>	부영이	대전
	9. 7.(토) 18:30		인형극 <인형할머니만 모르는 이야기>	쑥쑥	파주
	9. 8.(일) 18:30		테이블 인형극 <할아버지와 썰매>	윈터	구미

3. 부서의견

- 대규모 국제연극제 기획, 해외 연극팀 초청 등 연극제 개최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「구미시 문화예술진흥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」 제5조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」

제5조(행사의 위탁)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(행사·축제 포함)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

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범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부담 능력, 책임능력 및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

4. 사업 운영의 투명성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·노동조건
6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
7.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,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및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○ 구미아시아연극제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2025년도 예산편성요구액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도 비	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225,000
	소계(a)	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225,000
세출	○ 운영비		8,800	8,800	8,800	8,800	8,800	44,000
	○ 홍보비		16,400	16,400	16,400	16,400	16,400	82,000
	○ 인건비		124,800	124,800	124,800	124,800	124,800	624,000
	소계(b)	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□ 총 비용(a-b)		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	525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-	-	-	-	-	-
도 비		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225,000
시 비		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	525,000
민 간			-	-	-	-	-	-
기 타			-	-	-	-	-	-
합 계			150,000	150,000	150,000	160,000	150,000	750,000

5. 수입내역 ※ 유료 티켓 판매 수입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수입(a)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지출(b)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총비용(a-b)	0	0	0	0	0	0

6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7. 작성자

-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박다인(☎480-661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세출예산내역

구분	세부내역	금액(천원)
계		150,000
운영비	○ 픽업 차량비 800,000원*6팀 ○ 공연장 대관비 500,000원*8일	4,800 4,000
홍보비	○ 육교현수막 200,000원*5장 ○ 건물외벽 현수막 560,000원*1장 ○ 홍보 현수막 200,000원*2장 ○ 홍보 X-배너 40,000원*4장 ○ 소극장 입구 현수막 40,000원*2장 ○ 작은극장용 X-배너 40,000원*2장 ○ 홍보용 X-배너 40,000원*5장 ○ 아시아연극제전 현수막 100,000원*1장 ○ 가로등 현수막 80,000원*145조 ○ 포스터 1,000원*100장 ○ 리플렛 500원*1100장 ○ 티켓 250원*2,280장 ○ 디자인료 1,000,000원*1식	1,000 560 400 160 80 80 200 100 11,600 100 550 570 1,000
인건비	○ 기획인력 1,500,000원*2개월*2명 ○ 극장공연 무대감독 인건비 500,000원*12팀*1인 ○ 작은극장 무대감독 인건비 350,000원*8팀*1인 ○ 극장공연 진행인력 인건비 150,000원*12팀*2인 ○ 작은극장 진행인력 인건비 150,000원*8팀*2인 ○ 해외공연 10,000,000원*6팀 ○ 국내공연 6,000,000원*6팀 ○ 작은극장 공연 1,000,000원*8팀	6,000 6,000 2,800 3,600 2,400 60,000 36,000 8,000

○ 수입금 수입·지출 내역

구분	세부내역	금액(천원)
수입	합계	4,800
	○ 극장공연 유료티켓 6회×40석×15,000원	3,600
	○ 작은공연 유료티켓 6회×40석× 5,000원	1,200
지출	합계	4,800
	○ 사진촬영 인건비 150,000원*2인*7일	2,100
	○ 안전관리 인건비 90,000원*2인*7일	1,260
	○ 해외공연팀 코디인건비 1,440,000원*1개월*1인	1,440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향 목
	팀 장	심 주 희
	담 당 자	박 다 인 (480-6612)